◉보건복지부령 제36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8세 미만의 소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간·공휴일에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10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영 별표 1 제2호아목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8세 미만 소아의 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병원급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게 차등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장 등이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을 제한하여 승인한 사람 등이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환경부령 제61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5호부터”를 “제1항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영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8호”를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2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공하여야”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7호 중 “해당 화학물질의 활성성분 분석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효능에 관한 시험자료 등”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1)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예정량, 공정 개선·개발, 적용분야, 시범제조 및 시범생산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2) 공정도(임의 제출)
3) 화학물질의 분류정보(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 및 보관 방법,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잔량 발생 시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사후처리결과 생략 가능) 등

※ 비고: 1)부터 3)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보고자를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 ] 보고서 [ ] 변경보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보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고내용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② 고유번호 (CAS NO. 등)		
	③ 제조(수입·판매)량(톤)	[ ] 0.1톤 미만 [ ] 0.1톤 이상 0.5톤 미만 [ ] 0.5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2.5톤 미만 [ ] 2.5톤 이상 5톤 미만 [ ] 5톤 이상 10톤 미만 [ ] 기타 ( )	
	④ 용도분류체계		
	⑤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⑥ 상품 정보	상품명	
		구매처	
		함유 성분	
		용도	
		판매량	

수입자 (보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 번호	⑨ 대표자	⑩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⑪수입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탁자 (보고자가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⑫국외제조·생산자 등	상호(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을 (변경)보고합니다.
[ ] 판매

년 월 일

제조(수입·판매)자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작성방법

1. 보고자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상호·소재지·연락처 등의 정보를 적습니다.
2. 보고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현황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보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3. ①란 ~ ⑥란은 국외 제조·생산자 등이 보고자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자는 ⑫란의 국외 제조·생산자 등의 정보를 적고, 국외 제조·생산자의 보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③란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기타"에 그 수량을 ±10%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5. ④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으며, ⑤란은 용도분류체계가 기타인 경우나 일반 소비자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6.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⑥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화학물질의 판매자가 ⑥란을 작성한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에 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사업장에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8.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판매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판매와 관련된 보고는 ③란만 적어도 됩니다.
9. ⑦란부터 ⑪란은 보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 또는 변경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서 또는 변경보고서	⇒	접수	⇒	검토
제출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 ] 신규 [ ] 개별제출 [ ] 수입 [ ] 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 [ ] 공동제출 등록신청서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 · 부산물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등록의 형태	[ ]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분리중간체 [ ] 살생물제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⑤상호(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⑨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용도	⑩용도분류체계	
	⑪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⑫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⑬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⑭상품 내 함량(%)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⑮ 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항목	⑯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자료 첨부 여부
물리적·화학적 특성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				

	항목	⑯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자료 첨부 여부
인체유해성	급성 경구독성				
	급성 경피독성				
	급성 흡입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 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반복투여 독성(28일)				
	반복투여 독성(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				

	항목	⑯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자료 첨부 여부
환경유해성	어류 급성독성				
	물벼룩 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어류 만성독성				
	물벼룩 만성독성				
	육생식물 급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육생식물 만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 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생물 농축성				
	흡착 및 탈착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기타( )				

	항목	⑯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⑰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⑱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⑲자료 첨부 여부
고분자자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성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 ] 신규 [ ] 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의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제6쪽 참조	수수료 제6쪽 참조

첨부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5.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 4)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7)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 및 ⑭란의 상품 내 함량(%)을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의 상품명, ⑬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⑭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부터 ⑨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7. ⑩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고, ⑪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8. ⑫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9. ⑮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10. ⑯란의 자료개요에는 자료의 성격(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주요자료 또는 참고자료의 구분 등), 자료의 기본 정보(연구연도, 결과도출 방법, 신뢰도 등), 자료의 세부 정보(문헌의 종류, 시험기관, 제출 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비공개 여부) 등을 각각 적습니다.
11. ⑰란의 시험방법에는 시험방법의 정보(시험방법 준수 여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여부, 신청물질과 시험물질이 같은지 여부 등),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시험물질의 식별정보, 시험동물명, 성별 등), 시험조건의 정보(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별 성별 개체 수, 추가 정보 등)를 각각 적습니다.
12. ⑱란의 시험결과에는 시험결과값(결과값,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적습니다.
13. ⑲란의 자료첨부여부에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지 않은 시험결과인 경우에는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하고,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요약한 경우에는 시험 요약서를 첨부하며, 시험자료 전문이나 요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하는 경우는 ⑯란 ~ ⑱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등록신청서	⇒	접수	⇒	검토	⇒	등록통지서 작성	⇒	등록통지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량 [ ] 제조 [ ] 수입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 3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순도(%)	
	분자식 · 구조식			
	② 상품명		③ 확인된 불순물 · 부산물	
	④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⑤ 상호(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대표자	⑧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⑨ 수입국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용도	⑩ 용도분류체계	
	⑪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⑫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⑬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⑭ 상품내 함량(%)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table>
<tr><td rowspan="15">노출 정보</td><td colspan="2">용도의 범주</td><td colspan="2">[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 ] 소비자 용도 ( )</td></tr>
<tr><td rowspan="8">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td><td rowspan="6">산업적/전문적 용도</td><td>주요 사용 범주</td><td>사용용도에 대한 설명</td></tr>
<tr><td>[ ] 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
[ ]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써의 사용
[ ] 비분산적 사용
[ ]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 ] 기타</td><td></td></tr>
<tr><td>시설의 형태</td><td>시설에 대한 설명</td></tr>
<tr><td>[ ] 저장보관시설</td><td></td></tr>
<tr><td>[ ] 이송운반시설</td><td></td></tr>
<tr><td>[ ] 사용시설</td><td></td></tr>
<tr><td>[ ] 환경오염방지시설</td><td></td></tr>
<tr><td>[ ] 기타</td><td></td></tr>
<tr><td>소비자 용도</td><td>구체적인 사용 례</td><td></td></tr>
<tr><td rowspan="4">노출경로에 관한 구체적 기술</td><td rowspan="2">인체</td><td>주요 노출경로</td><td>노출경로에 대한 설명</td></tr>
<tr><td>[ ] 경구 [ ] 경피
[ ] 흡입 [ ] 기타</td><td></td></tr>
<tr><td rowspan="2">환경</td><td>주요 노출경로</td><td>노출경로에 대한 설명</td></tr>
<tr><td>[ ] 수계 [ ] 대기
[ ] 폐기물 [ ] 토양
[ ] 기타</td><td></td></tr>
<tr><td rowspan="2">노출형태에 관한 구체적 기술</td><td>산업적/전문적 용도</td><td colspan="2">[ ] 돌발적·간헐적 [ ] 가끔 [ ] 지속적·빈번한</td></tr>
<tr><td>소비자 용도</td><td colspan="2">[ ] 돌발적·간헐적 [ ] 가끔 [ ] 지속적·빈번한</td></tr>
<tr><td colspan="2" rowspan="2">제조·수입량 및 제조·사용일수</td><td>일일 평균 제조·사용량</td><td></td></tr>
<tr><td>연간 예상 제조·사용 일수</td><td></td></tr>
<tr><td rowspan="3">보유자료</td><td colspan="2">⑮ 물리적·화학적 특성</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⑯ 인체 유해성</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⑰ 환경 유해성</td><td colspan="2"></td></tr>
</tabl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량 [ ] 제조 [ ] 수입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제3쪽 참조	수수료 제3쪽 참조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관련 자료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합니다) 2.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6)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 및 ⑭란의 상품 내 함량(%)을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의 상품명, ⑬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⑭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부터 ⑨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7. ⑩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8. ⑪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9. ⑫란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10. ⑮란 ~ ⑰란은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자료를 소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등록신청서	⇒	접수	⇒	검토	⇒	등록통지서 작성	⇒	등록통지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등록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의 구분		[ ] 신규화학물질 [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등록의 형태		[ ]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분리중간체 [ ] 살생물제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화학물질이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접수번호	(접수일:)		자료제출기한	

수정·보완 사항

화학물질 식별정보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위해성	
안전사용지침	
노출정보	
기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④ 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 금회 제조(수입)량(톤)	
	⑥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협회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2.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수입량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7.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8. ⑧란 ~ 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등록면제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등록면제확인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신청결과통지서 작성	⇒	신청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확인번호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등)			상품명	
연간 제조(수입)량(톤)			금회 제조(수입)량(톤)	
수입(수출)국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협회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변경신고 7일 변경등록 7일 또는 1개월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사항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상품명	
	변경등록 사항	톤수 범위		
		용도		
		유해성· 위해성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② 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⑥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1조 제1항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의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사본 1부 3.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변경등록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등록 사유와 관련된 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4)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 ~ ⑥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3.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번호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처리절차

이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고)번호 제 호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변경사항	변경등록			
	변경신고			
최초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년 월 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록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상품명	
	② 용도			
개별제출 사유	[ ] 영업비밀 공개로 상업적 손실 발생 [ ] 개별제출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이견 [ ] 시험자료 선택에 대한 이견			
③ 구체적 사유 기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④ 상호(명칭)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대표자	⑦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⑧ 수입량(톤)	⑨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협회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상품 내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등록신청 개별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4. ④란 ~ ⑨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⑧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개별제출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개별제출확인신청서	⇒	접수	⇒	검토	⇒	확인소견서 작성	⇒	확인소견서 발급
신청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용도				
개별제출 사유				
확인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협회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②고유번호 (CAS NO. 등)		③상품명	
	④분자식·구조식		⑤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⑥등록의 형태	[ ]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분리중간체 [ ] 살생물제		
	⑦용도분류체계			
	⑧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⑨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⑩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⑪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⑫상호(명칭)	⑬사업자등록번호	⑭대표자	⑮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⑯수입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 ~ ⑪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③란의 상품명, ⑩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⑪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3.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4. ⑧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5. ⑨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⑫란 ~ ⑯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문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의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인사항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등록 여부	[ ] 등록 [ ] 미등록		
	등록신청자료			
등록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가 문의한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심사번호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상품명	
심사결과	유독물질 해당 여부	[ ] 유독물질 [ ] 해당 없음 [ ] 기타 [ ]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

1. 등록(변경등록)한 자의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
3. 사업자등록번호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총칭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등록번호 :
8. 자료 제출 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9. 자료제출기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자료	①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② 시험자료 명칭			
	③ 평가결과 사용용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10,000원, 소기업은4,000원)

작성방법

1.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2.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사용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결정 및 고지서 발급	⇒	사용료 납부	⇒	사용승인서 교부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1. 등록(변경등록)한 자의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
3. 사업자등록번호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총칭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등록번호 :
8. 자료 제출 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9. 자료제출기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해당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유해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①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기타				[ ] 있음 / [ ] 없음
	②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기능)	③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명	④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함량(%)	제품의 용도	⑤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⑨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⑩수입량(톤)	⑪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 서면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3. 제품 사진 1부 4.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유해화학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함유제품신고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②란은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4. ③란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5. ④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각각 적습니다.
6. ⑤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유해화학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7. ⑥란 ~ ⑪란은 신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⑩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함유제품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함유제품신고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생 산 [ ] 수 입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유해화학물질명	[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기타		
	고유번호 (CAS No. 등)			
	①등록번호			
	②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	③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명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함량(%)	④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⑤신고면제사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⑨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⑩수입량(톤)	⑪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생산 [ ] 수입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협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해당 제품의 성분명세서 1부 2. 신고면제확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인 경우에 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제품 내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제품명을 생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는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6. ⑥란 ~ ⑪란은 신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⑩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면제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면제확인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신고면제확인증 작성	⇒	신고면제확인증 발급
신청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 [ ] 제조 [ ] 생산 자에 의한 [ ] 선임서 [ ]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외 제조(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 수출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 ] 해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작성방법

1.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선임서 또는 변경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협회

선임서 또는 해임서 (제출인) ⇒ 접수 (처리기관) ⇒ 검토 (처리기관) ⇒ 신고증 통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6. 국외 제조(생산)자 또는 최종 수출자 :
7. 제품명 등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유역)환경청장
협회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 보호 [ ]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①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신청 요지 및 이유
	보호대상 자료 목록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② 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⑥ 수입량(톤)	⑦ 수입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료 [ ] 보호 [ ] 보호기간 연장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자료보호 수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 ~ ⑦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⑥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자료보호(연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자료 [ ] 보호 [ ] 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수리결과	화학물질명 (총칭명)			
	자료보호항목		자료보호기간 만료 예정일	
	자료 비보호	항목		
		사유		
		이의신청기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기 관 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받기 위하여 등록 면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에 대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은 시약용 화학물질에 대하여 연 단위로 등록 면제 확인을 하도록 하던 것을 최초 1회만 확인하도록 그 주기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18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2항 중 “매 분기”를 “매 반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마력·저소음 소음배출시설의 기술진보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음향파워레벨이 일정 기준[실내 설치 시 87dB(A), 실외 설치 시 77dB(A)]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교육부령 제76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위임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특별시·광역시”를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회계연도별 특별시·광역시”를 “회계연도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법령에”를 “다음 각 호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교육청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급여 등 법령에 따른 경비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는 한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될 항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